▣ 논 단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김 재 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 법학박사, 주저자

박 세 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공동저자

양 지 훈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위원 / 법학박사, 공동저자

요 약 문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사전에 설계된 방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는데,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배경에는 급격한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체계적인 부의 이전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익자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탕진할 위험을 방지하고, 도산격리 기능을 통해 유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언대용신탁의 일환으로서 절세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 요건은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이 논문은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소중한 연구 수행의 기회를 주신 기념사업회 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익한 지적을 해 주신 심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 개선 및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치매·간병 보험의 보험금까지 신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수익자 범위를 형제자매나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설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신탁 권유가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자격규제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 보험금청구권신탁, 보험, 신탁,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目 次〉

Ⅰ. 서 설
Ⅱ.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도입경과
1. 개념
2.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한 보험금 청구권신탁 도입
Ⅲ.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구조와 한계
1. 개관
2. 신탁대상이 되는 수탁금액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구조
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5. 신탁수익자 범위
6.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
Ⅳ.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법제 재검토의 필요성
2. 신탁대상이 되는 수탁금액 제한 폐지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구조의 다양성 보장
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의 확대
5. 신탁수익자 범위의 확대
6.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 재검토
7. 자격규제의 완화 필요성
8. 방카슈랑스 룰 우회 차단
Ⅴ. 결 언

Ⅰ. 서 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데, 보험수익자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된다. 보험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제한능력자거나 낭비벽이 심해서 수령한 보험금을 탕진할 위험이 클 수 있고, 보험수익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등을 신탁재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진의를 실현할 수 있음에 더하여 안정적 자산운용도 가능하다. 애초에 신탁은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부터 자산관리를 거쳐 상속을 대체하는 기능과 함께 후견을 보완하는 장치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1)]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우리나라도 생명보험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2024년 11월 12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으로 약칭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제약이 있는바,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일반적 내용을 검토한 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도입경과

1. 개념

가.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할 때 신탁수익자가 될 자가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 또는 신탁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신탁상품을 의미한다.[2)] 2011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신탁계약의 효력으로부터 유언 대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는 차이가 있다. 유언에 의한 상속도 아니고,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이라고 할 수도 없다.[3)4)] 유언대용신탁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언대용신탁과

1) David Fedor and Robert H. Sitkoff, “Revocable Trusts and Incapacity Planning : More than Just a Will Substitute” Elder law Journal Volume 24-1,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2016, p. 47.
2) 송두일, 알기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금융투자협회, 2012, 116면; 道垣內弘人, 「信託法」 第二版, 有斐閣, 2022, 321頁.
3) 오영표,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제2판, 조세통람, 2023. 108면.
4) 양지훈(a),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66면.

같다고 보더라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5]

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다시 말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공존하는 형태지만 두 계약의 시기는 겹치지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이 아닌 '신탁'의 한 종류라고 정의해야 한다.[7]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이 되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신탁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치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8]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이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즉 어떤 보험이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수탁가능한 신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망보험)이 주로 해당하여 생명보험신탁이라고도 한다.[9]

다. 기능

(1) 재산관리기능

신탁은 자산관리, 승계관리 및 후견보완을 위하여 효율적인 수단이다. 신탁은 생전은 물론 사후의 재산귀속과 수익관계를 정할 수 있고,[10] 특히 증여 대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은 고령자가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수익하고 사망한 때 신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수익자에게 승계함으로써 분쟁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산 상속 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11]이거나 제한능력자는 아니지만 장애나 낭비벽,

---

5) 양지훈(a), 앞의 논문, 67면.
6) 양지훈(b),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4, 133면.
7) 양지훈(b), 앞의 논문, 133면.
8)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연구보고서 2018-13, 보험연구원, 2018.9, 85면.
9) 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3면.
10)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565면;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7면.
11)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행위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개정되었다. 추가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되었다. 정리하면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다.

기타 충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유지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하는데, 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증이나 상속이 개시될 무렵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승계제도로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12)]

(2) 신탁재산의 독립적 기능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의 주체로부터 독립된 성격을 가진다.[13)] 그러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행위는 물론 국세 등 체납처분도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신탁계약 주체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또한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신탁재산은 그의 파산재산에 속하지도 않는다(신탁법 제24조). 이는 도산절연성, 도산격리기능이라고도 한다. 결국 재산의 대외적 공시차원에서 보면 재단법인과 신탁재산은 크게 다를 바 없는, 즉 일정한 재산으로 재단법인에 가까운 독립성을 가진다.[14)] 이는 위탁자로 하여금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당해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재단법인과 유사한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사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신탁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15)]

(3) 안전한 자산관리 및 운용 기능

수탁자는 인가받은 신탁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는 실무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신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수탁자로서 기능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산운용전문가인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 기능은 우리 신탁 실무의 관행이 낳은 신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16)] 신탁업자는 신탁업을 인가받기 위하여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지속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신탁업자의 재무·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자본시장법 제30조~제36조), 신탁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자본시장법 제102-제117조의2) 등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개인과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며 보다 안전한 자산관리 및 운용을 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

12) 석수길, "신탁을 통한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38면.
13) 최수정, 「신탁법」 제3판, 박영사, 2021, 15면.
14)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79-81면.
15) 오영걸, 앞의 책, 82면.
16) 오영걸, 앞의 책, 74면.

(4) 복지 향상의 기능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신탁의 일반적 기능에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할 필요가 큰 경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취약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가. 도입과정

우리나라도 고령화·상속설계 수요 증가와 함께 오래전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법령상 명확한 규정의 부재와 보험금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수탁가능 재산인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되지 못하고 있었다.[17]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조건부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채권신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신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 또한, 법무부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신탁법에 따른 '특정 재산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도 볼 수 없어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19] 이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방안 중 하나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2023년 7월 법무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었다.

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에서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

17) 자본시장법 제103조에서는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8) 이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 관련 고찰 - 최근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지 2024년 제3호 통권 제170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29면.

19) 법무부 유권해석(2013.6.26.), 이보미, 앞의 보고서, 29면에서 재인용.

20) 이영경,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금융브리프 포커스 제34권 6호, 한국금융연구원, 2025, 14면.

청구권신탁의 주요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3천만원 이상의 일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21] (ii) 보험계약의 요건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iii) 보험계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iv)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 체결 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 등은 불가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제도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는 물론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다소 협소하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관련 법령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신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신탁대상)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보장 보험에 한정
② (계약구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로 한정
③ (신탁수익자) 보험계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으로 제한
④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내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0호)

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 규모

(1) 신탁시장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 신탁 시장규모는 2013년 497조원에서 2022년 1,224조원으로 146%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 이전 등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신탁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신탁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현재의 낮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겸영신탁회사 보다 보험회사가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체결한 보험금청구권 양도나 중개행위 시 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겸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되는 경우 타 겸영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22]

(2)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 규모와 전망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종합신탁업 자격이 있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23] 출시 후 1년 3개월 만

21) 재해·질병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 양지훈(a), 앞의 논문, 139면.
23)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5개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이 된다.

에 계약액이 6,715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망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구조와 한계

1. 개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3천만원 이상의 일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ii)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iii) 신탁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iv)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 체결 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 등은 불가하다.

2. 신탁대상이 되는 수탁금액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최소 수탁금액은 3천만원이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 3). 그런데, 이러한 최소금액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 사망보험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총 13만 682명인데, 이들이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장금액은 평균 1,95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5]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가능재산에는 최소금액 등 신탁가능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보험금청구권신탁에만 최소금액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26]

일본 등 주요국도 보험금청구권신탁 수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기준액을 3천만엔 정도로 설정하였으나[27], 상품 모집에 어려움을

---

24) 박시은, "[단독] 상속분쟁 막는 '보험금신탁' 6000억 돌파", 한국경제, 2026.3.19.(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932351).

25) 백윤미, "연예인 사망보험금 수억원이라지만… 현실 평균 수령액 1952만원". 조선경제, 2024.11.20.(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1/20/W622WD2M6VFWHCOLRAWFQ7NQRQ/).

26) 같은 의견으로는 양희석(a),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40집, 한국보험학회, 2024, 112면.

27) 푸르덴셜생명보험의 경우이다.

겸으며 최근에는 3분의 1 수준인 1천만엔으로 낮춰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1천만엔으로 형성된 최소가입금액도 법령에 규정을 둔 것이 아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다.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구조

현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구조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0호 가목 2). 즉 (i) 보험계약자 겸 위탁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ii)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iii) 신탁회사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고, (iv) 보험사고 발생 후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신탁회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하고, (v)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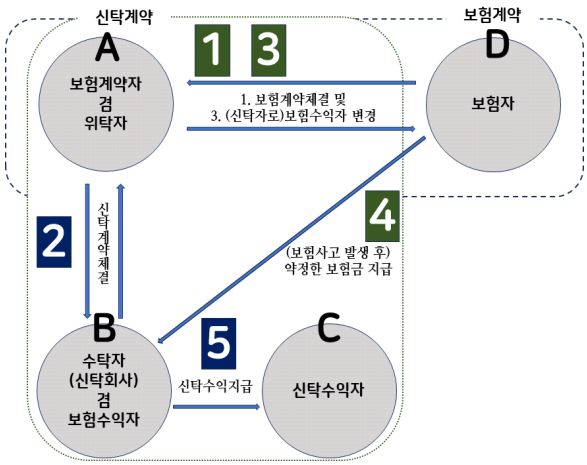

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재산권의 형태를 갖추고, 이전 가능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은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약정한 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머물러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체적 권리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은 현존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29]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A가 암 진단 시 1억원의 보험금을

28) 이지연, "일본의 민사신탁(가족신탁)과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검토", 『해외전문가 칼럼』 제522호, 생명보험협회, 2022. 8, 45면, 최초에는 3,000만엔 이상만 상품 가입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29) 한기정,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보험연구원, 2009, 99면.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B와 체결하였는데, A가 사망 시까지 암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것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험금청구권에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신탁재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의 기대나 수요에 반하므로 취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견해가 있지만[30]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사망을 담보로 하는 손해보험, 치매·간병 보험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5. 신탁수익자 범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는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피보험자의 '자녀', '배우자' 또는 '상속인'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수익자의 성명을 밝혀서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31] 현재 우리나라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가 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신탁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i) 신탁수익자가 실질적 보험수익자이고, (ii) 신탁법에 신탁수익자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만 신탁수익자를 규정하는 것은 이상하며, 보험금청구권에서 신탁수익자의 확정시에도 상법 제733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상법 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32]

6.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

---

30) 한기정, 앞의 논문, 101면.

31) 서고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0면.

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2024.11.12., 2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를 방지하고, 신탁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보험계약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이 존재하면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대출을 받는다면 그 신탁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는 부수적 권리로서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법제 재검토의 필요성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하여 일시에 지급된 고액의 보험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을 장기적·계획적으로 관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미성년자·장애인·치매 환자 등 재산관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익자 보호 필요성의 확대를 고려하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단순한 상속설계 수단을 넘어 생활보장과 복지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그 도입 의의에도 불구하고 허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이 요구되며, 신탁수익자의 범위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보험계약은 신탁 설정이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권유·판매와 관련해서도 기존 보험모집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제도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에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취지를 존중하되, 제도의 본질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탁 가능 보험금의 범위, 계약구조의 다양성,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신탁수익자의 자격, 보험계약대출 제한, 판매·권유 자격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검토한다.

2. 신탁대상이 되는 수탁금액 제한 폐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현행과 같이 3,000만원으로 지정된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유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하기 희망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체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금액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적어도 평균 사망보험금액에 기준을 맞추는 등 기준금액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 수요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문턱을 낮추면 수요층이 넓어질 수 있고, 특히 소액 자산을 가진 고령층, 중산층에게도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탁보수 등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구조의 다양성 보장

가. 다양화 필요성

현재는 위탁자를 보험계약자로,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구조, 즉 위탁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고, 수탁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유형으로만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자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구조를 통해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상속인을 사후수익자로 설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즉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유형(모델)을 허가하는 방안, 수탁자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같은 유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도 보험금청구권신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정가능한 유형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수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유형

수탁자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유형, 즉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겸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지위를 함께 겸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서든지, 신탁회사에게 보험금청구권 양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위탁자에게는 매우 번거롭지만 수탁자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경우 신탁계약 당사자, 특히 위탁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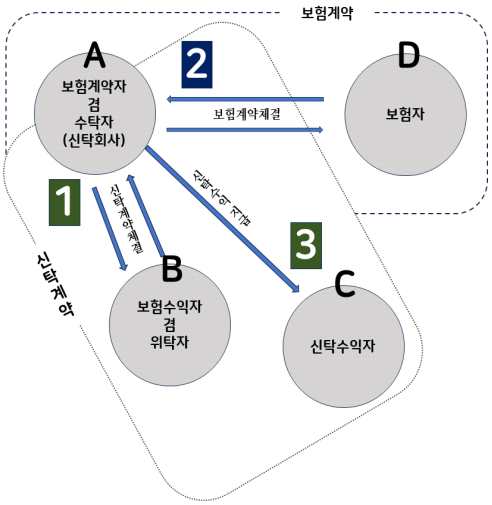

수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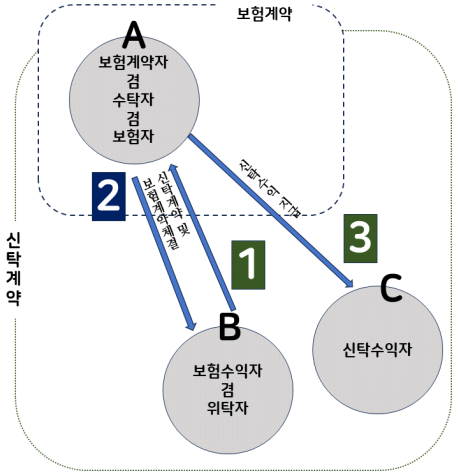

다. 위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유형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설정하는 구조, 즉 위탁자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같은 유형도 상정할 수 있다(위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상속인을 사후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구조가 흡사하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이 보험금청구권인 것에 불과하다.

위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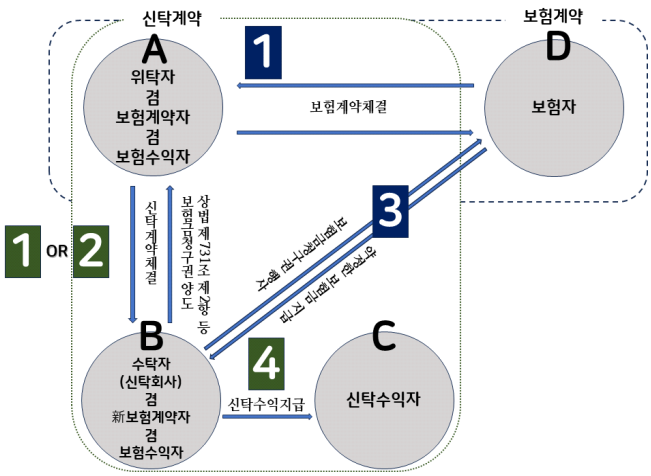

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의 확대

가. 손해보험 등 타 보험상품으로의 확대 가능성

(1) 정액보험에서의 적용 가능성

현행 자본시장법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을 일반사망보험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상품 외에 손해보험상품 등도 신탁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우선 손해보험 정액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비교할 때 보험금액이 크지 않아 신탁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정액보험 상품개발의 자제를 요청한 바도 있어[33] 손해보험 정액보험 전반을 신탁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나아가 판례는 손해보험금청구권이 약정한 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34] 생명보험에서 사망이 발생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적 사고인 것과 달리, 손해보험에서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탁재산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부적격재산이 아닌 이상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한 재산이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35] 이러한 관점에서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사망·질병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지급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정액급부형 보험금청구권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후유장해 등 사망이 아닌 사고를 담보로 하는 경우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치매보험 등 복지신탁에서의 적용 가능성

치매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36]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3%인 1,051만 4천명인데, 점차 빨라져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37] 초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

33) 류정현, “"정액보험 개발 자제하라"…과잉 진료 우려에 금감원 '급제동'”, SBS Biz, 2023. 8. 9.(https://biz.sbs.co.kr/article/20000130815).
3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35) 최수정, 앞의 책, 250면.
36) 양희석(b),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59면; 안성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 2021. 6, 174면.
37) 통계청 보도자료, “2025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5.9.29., 25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 및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보험 가입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이다.[38]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 발병 시 피보험자의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인해 지급된 치매보험금이 제3자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 대상 보험상품을 치매보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

치매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i) 질병 특성상 사고 우연성이 높고, (ii) 치매보험금 지급시 CDR 검사 등 객관적 판정절차를 거치므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유인이 적으며, (iii) 또한 치매보험금은 간병비, 생활비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여 일시 지급보다는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발병이 특정되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에서도 신탁재산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을 뿐 금전채권이 확정적 권리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밖에 달리 신탁재산을 제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상 보험금청구권의 구체화 여부 또는 그 시기가 불확실한 권리임을 이유로 신탁재산성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39] 다만, 신탁의 목적 및 활용가능성 고려시 정액보험금으로 신탁대상을 한정하고, 치료비용 충당 목적의 비정액 보험금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탁자 본인의 요양·간병·의료·재활 등 비용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신탁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 여겨진다.

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의 확대

최근 보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체로 보험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보험·신탁·상속·은퇴·건강·요양·사망 이후 자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해상충, 업권 간 이해관계, 보험업의 본질과의 정합성 등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결합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38) 치매/장기간병보험 신계약건수 : 21.8만건('23년) → 31.1만건('24년)이다(생명보험협회 자료)

39) 같은 의견으로는 한기정,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통권 제57호, 보험연구원, 2009, 99면.

5. 신탁수익자 범위의 확대

가. 기존 관념의 변화

(1) '가족'과 '가정'의 개념의 변화

법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규정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의 개념에 벗어나 최근 1인 가구와 동거 등 새로운 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고 있다(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항).

(2)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초고령국가로 진입하였고,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는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를 돌파해 초고령사회[40]로 진입하고 '35년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1년과 비교하여도 각각 1만 5백명, 0.03명 감소한 수치로 초저출산[41] 국가이기도 하다.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며 일각에서는 국가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

40) UN DESA(경제사회국), "The Aging of Population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1956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41) 참고로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와 개정 입법 시도가 있으나(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2516, 제안일 : 2020.7.30);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9984, 제안일 : 2021.5.10.);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5254, 제안일 : 2021.4.13.); 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9102, 제안일 : 2022.12.23.); 최강욱 의원 대표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9933, 제안일 : 2023.2.9.) 등 현행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정부기관(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명칭과 관련 정책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2)(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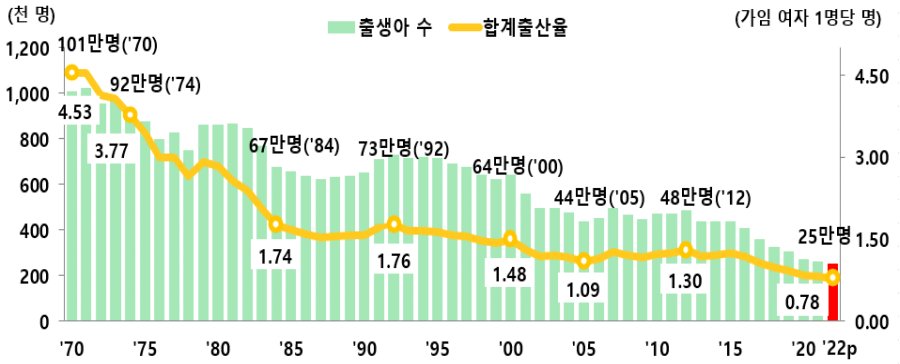

(3) 치매환자의 증가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42] 인구 고령화는 단순

42)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현재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띠고 있으나,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통계청(2021. 12. 9.), 18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천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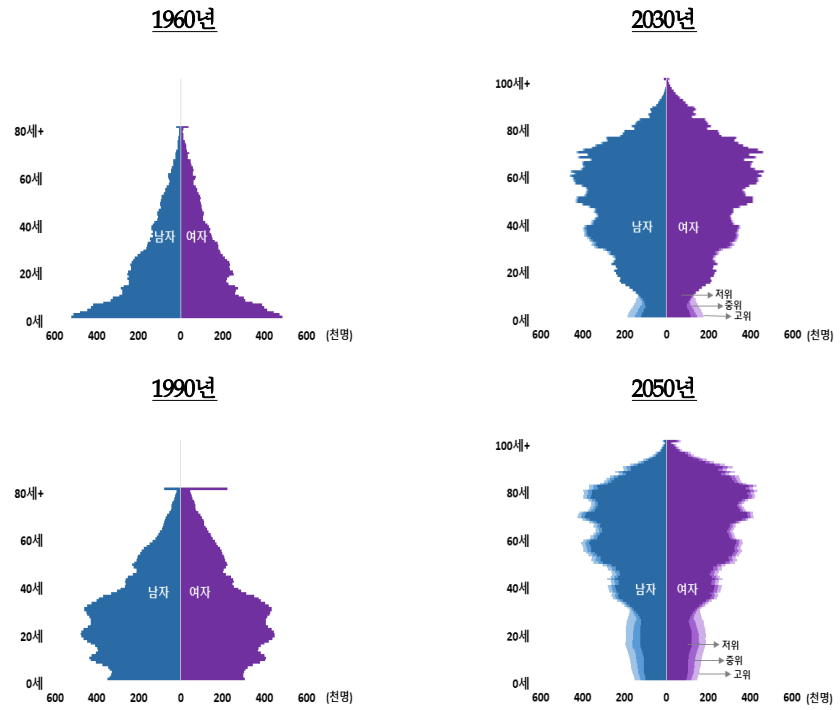

히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특히 치매 환자 증가와도 연관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4%를 넘었다.[43] 실제 추정 치매환자 추이도 2021년 약 89만명에서 2023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2030년 142만명, 2060년에 346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4]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국가에게 맡겨두고, 사적 기능으로써 신탁을 도입하면 고도 경제 성장기 자산을 축적한 고령자가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45]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산은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치매환자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나. 관계법령에서의 신탁수익자 제한 규정

(1) 신탁법

신탁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일정한 신탁수익을 얻는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의미한다.[46] 신탁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도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도 당연히 신탁수익자는 존재한다. 신탁법에서는 신탁수익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신탁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신탁수익자 개념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2조). 신탁수익자는 그 권리가 확정적이지 않고, 신탁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자의 권한 행사에 따라 신탁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또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신탁수익권을 양수함으로써 신탁수익자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신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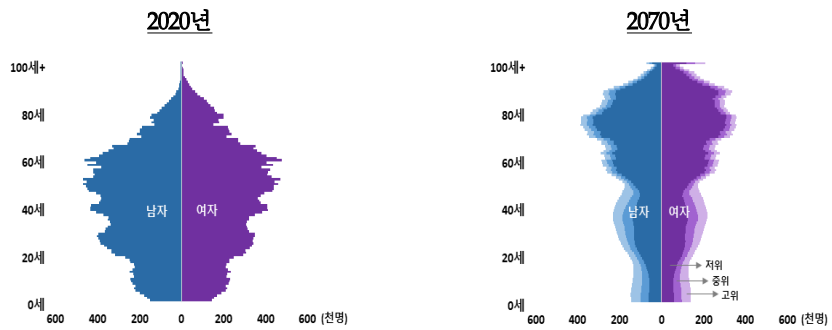

43) 이지수·강민지·최민지·윤혜원·이옥진·조현희·조현성·이정례·서지원·고임석,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12면.
44) 이지수·강민지·최민지·윤혜원·이옥진·조현희·조현성·이정례·서지원·고임석, 앞의 보고서, 23면.
45) 류건식·손성동,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23-14, 2023, 보험연구원 13면.
46) 양지훈(a), 앞의 논문, 85면.

제101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신탁법은 신탁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신탁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므로, 비록 신탁을 설정할 당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사람이어야 한다.[47]

(2) 상법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일종이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3조 제1항).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상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48]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절대적 권리이며,[49]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신탁도 마찬가지이다.

다. 신탁수익자 범위의 확대 필요성

(1)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 필요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된 현재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신탁수익자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여, 실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물론 제도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다.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인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신탁수익자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비영리 공익단체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공익적 요소로서의 활용 가능성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위탁자가 남겨진 가족이 없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 등을 신탁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미국은 신탁수익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47) 최수정, 앞의 책, 107-108면.
48) 박세민, 「보험법」 제8판, 박영사, 2025, 1228면.
49) 양지훈(c),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37면.

일본도 공익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신탁수익자 범위의 확대는 보험계약자의 사적 자치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유류분 침해, 채권자 사해행위, 고령자 착취 가능성 등 민법상 통제장치와 병행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공익적 요소로서의 활용을 허용한다면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 재검토

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

(1) 보험계약대출의 의의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대출의무를 부담한다.[50] 실무상 '약관대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라 불린다.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생사혼합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과 같이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며, 순수보장성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 제1항 단서),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을 선급금으로 보고 있다.

(2) 학설의 입장

보험계약대출에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51]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서 대출원리금을 상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특수한 소비대차라는 것이다.[52]

---

50)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1) 박세민, 앞의 책, 1177면.

52) 박세민, 앞의 책, 1177면.

(3) 판례의 입장

현재 판례는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다고 해석한다.[53)54)] 선급금으로 보는 주요 논거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점을 들고 있다.[55)]

나. 담보 가치 하락과 특약을 통한 방지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 신탁계약의 안정성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i) 신탁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특약, (ii)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약, (iii)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불가 특약을 포함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56)] 일본도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 자격규제의 완화 필요성

(1)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판매 자격

현행법상 보험모집인이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신탁인 상사신탁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 제2호[5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58)]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

---

5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
54) 소비대차설을 지지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55) 박세민, 앞의 책, 1177면.
56) 양지훈(b), 앞의 논문, 149면.
57)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58)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를 위탁하고 있고, 투자권유대행인 중 펀드투자권유대행인[59]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평균 합격률은 59%이다.[60]

따라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모집할 수 없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면 보험모집인 등에게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중개(소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자권유대행인은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위탁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밖에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고 이는 신탁업자가 직접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굳이 이러한 자격요건을 둘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므로, 신탁판매에 관한 소정의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면, 현행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서 신탁내용만 따로 구분하여 (가칭)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61]

8. 방카슈랑스 룰 우회 차단

(1) 방카슈랑스의 의의

방카슈랑스란 프랑스어 방크(Banque)와 아슈랑스(Assurance)의 합성어로 보험과 은행이 결합한 용어를 의미한다. 방카슈랑스는 금융자유화의 결과 금융산업에서의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거나 모호해지는 금융겸업화 현상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업무영역의 분리원칙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지주회사나 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상호진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업무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방카슈랑스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하고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이다.[62] 우리나라는 일부 보험회사의 제휴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기회 보장을 위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고 있고[63], 기존 모집 채널과의 마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점포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점포별로 2명까지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59)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7조 제1호).

60) 2016~2020년 5년 자료, SS 직업문제연구소 직업사전 참조.

61) 양지훈(a), 앞의 논문, 178면.

62) 나동민, "방카슈랑스의 국내도입 평가와 발전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5-17, 한국개발연구원, 2005, 15면.

63)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주 계열사로의 판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사업자의 판매 비중 규제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기존 '25%룰'이 완화되었다.

만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4]

(2) 방카슈랑스 룰 우회 차단

은행, 증권 등 타 겸영신탁회사는 이미 신탁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신탁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된다면 방카슈랑스 등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연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특정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판매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는 신탁계약을 인수하는 회사가 특정 보험회사를 추천하는 등 방카슈랑스 룰을 우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65]

Ⅴ. 결 언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할 만큼[66] 보험의 역할과 효용은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은 유족생활 보호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유연한 상속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 성장기를 넘어 안정기로 접어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경제·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속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약정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험과 신탁의 결합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을 장기적·계획적으로 관리·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상속설계 수단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향상이라는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

64) 2026년부터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박정연,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50% 확대 … "소비자 선택권 확대" vs "대형사 쏠림 심화", 2025.12.05.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05/2025120500126.html).

65) 권효상,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8, 267면.

66)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21면.

구하고 현행 제도는 그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수요와 제도적 기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핀 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최소 수탁금액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3,000만 원 기준은 우리나라 사망보험 평균 보장금액(약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액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중산층도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요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탁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수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유형, 위탁자=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유형 등 다양한 모델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신탁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탁재산이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일반사망보험에 한정하고 있으나, 손해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품과 치매·간병보험까지 신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금 남용 위험이 크고, CDR 검사 등 객관적 판정절차를 통해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넷째,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며 민법상 가족 범위보다도 협소한 과도한 규제이다. 적어도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나아가 비영리 공익법인까지 수익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적 자치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 침해, 채권자 사해행위, 고령자 착취 등에 대한 상속법·민법상 통제 장치와 병행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계약대출 제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는 보험계약자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특약 등 대안적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판매·권유에 관한 자격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권유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탁계약 체결 권한이나 재산 수취 권한이 없는 단순 소개 행위에까지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탁 권유에 특화된 별도의 자격시

험(가칭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우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규제하는 제도인데, 현재 33%로 완화된 판매 비중 상한을 50%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계열 신탁회사가 보험금청구권신탁 채널을 통해 계열 생명보험사 상품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카슈랑스 규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입법적 과제가 해결되어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고령사회의 자산 이전 수단이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적 후견 보완 장치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논문접수 : 2026. 03. 31. / 심사개시 : 2026. 04. 19. / 게재확정 : 2026. 04. 21.)

참 고 문 헌

1. 단행본

道垣內弘人, 『信託法』 第二版, 有斐閣, 2022.

David Fedor and Robert H. Sitkoff, “Revocable Trusts and Incapacity Planning: More than Just a Will Substitute”, Elder Law Journal Vol. 24, No. 1,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2016.

박세민, 『보험법』 제8판, 박영사, 2025.

송두일, 『알기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금융투자협회, 2012.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오영표,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제2판, 조세통람, 2023

최수정, 『신탁법』 제3판, 박영사, 2021.

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2. 논문

권효상,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8.

서고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안성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 2021.

양지훈(a),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양지훈(b),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4.

양지훈(c),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양희석(a),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40집, 한국보험학회, 2024.

양희석(b),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이지연, “일본의 민사신탁(가족신탁)과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검토”, 『해외전문가 칼럼』 제522호, 생명보험협회, 2022. 8.
이영경,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금융브리프 포커스』 제34권 제6호, 한국금융연구원, 2025.
한기정,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보험연구원, 2009.

3. 연구보고서

나동민, “방카슈랑스의 국내도입 평가와 발전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5-17, 한국개발연구원, 2005.
류건식·손성동,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23-14, 보험연구원, 2023.
이지수·강민지·최민지·윤혜원·이옥진·조현희·조현성·이정례·서지원·고임석,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연구보고서 2018-13, 보험연구원, 2018. 9.
이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 관련 고찰 –최근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지 2024년 제3호 통권 제170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4. 판례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1127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5. 기사

강우석, “사망보험금 금융사가 관리… 883조 시장 열렸다”, 『동아일보』, 2024.11.12.
곽재민, “883조 사망보험금 둘러싼 갈등 줄어든다… 신탁 재산 시장 지각 변동”, 『중앙일보』, 2024.10.31.

박시은, “[단독] 상속분쟁 막는 ‘보험금신탁’ 6000억 돌파”, 『한국경제』, 2026.3.19.
박정연,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50% 확대 … ‘소비자 선택권 확대’ vs ‘대형사 쏠림 심화’”, 2025.12.5.
백윤미, “연예인 사망보험금 수억원이라지만… 현실 평균 수령액 1952만원”, 『조선경제』, 2024.11.20.
류정현, “‘정액보험 개발 자제하라’… 과잉 진료 우려에 금감원 ‘급제동’”, 『SBS Biz』, 2023.8.9.
한예나, “사망 보험금, 나눠서 자녀에게 주세요… 883조 ‘보험금 신탁’시장 열려”, 『조선일보』, 2024.11.25.

6. 기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2024.11.12.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021.12.9.

Abstract

A Legal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Insurance Claim Trusts

Kim, Jaedoo
Park, Semin
Yang, Jihoon

Insurance Claims Right the Trusts refer to a scheme in which the policyholder's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under an insurance contract is placed in trust property, so that, upon the death of the insured, the trustee receives and manages the insurance proceeds and distributes them to the beneficiary in installments according to a prearranged plan.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is scheme had long been delayed due to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basi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fter extensive discussion, however, insurance claims right trusts were formally permitted through the November 2024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claims right trusts is grounded in the growing need to secure the livelihood of surviving family members and to facilitate systematic wealth transfer in response to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the transition to a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scheme is to prevent beneficiaries lacking sufficient asset-management capacity—such as minors,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persons with dementia—from squandering a large lump-sum death benefit, while also ensuring the safe protection of the bereaved family's assets through the bankruptcy-remoteness function of the trust. In majo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milar mechanisms have already been widely utilized as a form of will substitute trust for purposes including tax planning and welfare enhancement.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requirements for entrustment are limited to ordinary death insurance policies with death benefits of at least KRW 30 million, and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and the settlor must all be the same

person. In addition, strict requirements apply, such as limiting beneficiaries to the spouse and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and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where a policy loan is outstanding.

Nevertheles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cheme, several regulatory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refinements are necessary. First, the scope of insurable claims eligible for trust should be expanded beyond death benefits to include benefits payable under dementia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which demand among the elderly is high. Second, in light of changing family structures, including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permissible range of beneficiaries should be extended to siblings and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allow more diverse models of insurance claims right trusts. Fourth, the restriction concerning policy loans should be reexamined. Fifth, policy supplementation is needed with respect to qualification regul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eligibility requirements that would allow qualified professionals such as insurance solicitors to recommend or arrange trust structures involving insurance claims.

Key Words : Insurance Claims Right Trust, Insurance, Trus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